



##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

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(☎ 044-202-7783)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**2020년에도 계속** 지원됩니다.
-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
  -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**215만원**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  -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(2.87%)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**9만원**이며, **5인 미만 사업체**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.
- \* (5인 미만) 월 11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,  
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[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\(www.jobfunds.or.kr\)](http://www.jobfunds.or.kr) > 사업소개(지원 대상·요건 등)

### <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>

-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- 주요내용
  -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)
  - \* (5인 미만) 월 11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,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 :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(☎ 1588-0075)

##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☎ 044-202-7313, 7322)

-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·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.
-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- 유효기간을 기존 '1~3년'에서 '5년'(재발급 가능)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 -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'200~300만원'에서 '300~500만원'으로 높아집니다.
  - 훈련비 자비부담률\*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.

▲ 현행: ▲ 실업자: 30% 수준, ▲ 재직자: 0~40%

▲ 개편: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

\*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

-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### <실업자·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「국민내일배움카드」로 통합>

- 추진배경 :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
- 주요내용
  - ① (지원대상)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(단,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)
  - ② (지원내용) 유효기간 5년(갱신 가능), 지원한도 300~500만원
  - ③ (자부담 개편) 실업자,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직업능력개발팀 (☎ 02-2171-1792~6, 1798)

##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18)

-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·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·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.
  -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\*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
    - \* 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
 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(예시: 1,000인)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  -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### <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>

- 추진배경 : 정년퇴직·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
- 주요내용
  - ①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
  -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
- 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서희경 (☎ 02-950-9829)

##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☎ 044-202-7697)

□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
○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\*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.

\* ①보험설계사·우체국보험 모집원,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(27종), ③학습지교사, ④골프장 캐디, ⑤택배기사, ⑥퀵서비스기사, ⑦대출모집인,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⑨대리운전기사

○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(21.1.1. 시행)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.

구분	대상	내용
대표이사 (21.1.1. 시행)	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	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부여
발주자	총 공사금액 50억 이상	공사단계별(계획, 설계, 시공) 안전 보건대장 작성·확인·이행 의무 부여
가맹본부	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	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·시행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부여

○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(원청)의 책임범위 확대,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.

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: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·지정한 경우로서 지배·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

② 도급인의 의무 :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

③ 의무이행 강화 :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\*

\* (중전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→

(개정)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(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, 재범 시 가중)

○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·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대상 물질 제조·사용 작업

↳ (종전)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→ (개정)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\*

\* 단, 일시·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

- 중량비율 1% 이상 황산·불화수소·질산·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

↳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\*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

○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.

①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: 타워크레인 등 기계·기구·설비 등이 설치, 작동 또는 설치·해체·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

② 안전관리자 :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(현행 : 120억 → 개정 : 50억)

○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, 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'전기업'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○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.

① MSDS 작성·제출자 :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(종전 : 양도·제공)하는 자로 변경

②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비공개 :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·함유량 기재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

### <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>

□ 추진배경 :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

□ 주요내용

-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: (종전) 근로자 → (개정) 노무를 제공하는 자
- ② 대표이사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
-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: 책임범위 확대,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
- ④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
- ⑤ 건설업 안전 강화
- ⑥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대상 변경 등

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6일

(대표이사 책임 : 2021년 1월 1일, MSDS 제출 : 2021년 1월 16일)

※ 문의 및 상담 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상호 (☎ 02-950-9813)

**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**  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-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48천원 이었으나,
-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
장애인 고용률	2019년	2020년
고용의무 이행률이 3/4이상	월 1,048,000원(부담기초액)	월 <b>1,078,000원(부담기초액)</b>
고용의무 이행률이 1/2이상~3/4미만	월 1,110,880원	월 1,142,680원
고용의무 이행률이 1/4이상~1/2미만	월 1,257,600원	월 1,293,600원
고용의무 이행률이 1/4미만	월 1,467,200원	월 1,509,200원
장애인 미고용	월 1,745,150원(최저임금액)	월 1,795,310원(최저임금액)

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[고용노동부 홈페이지](#) > [정책자료](#) > [대상자별 정책](#) > [장애인](#)

**<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>**

-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
- 주요내용
  - 부담기초액 상향
    - 현행 : 1,048,000원~1,745,150원(5단계)
    - 개정 : 1,078,000원~1,795,310원(5단계)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☎ 044-202-7213)

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.

○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○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.

\*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,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360만원

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(일자리창출) >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

### <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>

□ 추진배경 :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

□ 주요내용

○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 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3)

##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65)

-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-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\*를 도입한 경우,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\* 정년 폐지, 정년 연장(1년 이상),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
-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,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.
-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사업 관련 보도자료

### <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>

- 추진배경 :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주요내용
  -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
    -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
  -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출하여야 함
-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 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3)

**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**  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56)

-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(1~23%)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    - \* 노동자 수의 20% 한도 지원 (대규모 기업은 10%)
  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중장년 참고

**<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>**

- 추진배경 :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
- 주요내용 :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(1~23%)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 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3)

##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1)  
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(☎ 052-704-7332)
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  - (신청시기) 평일 : ~이용일 7일전까지,  
주말·연휴·성수기 : ~이용 직전 월 10일까지
  - (신청방법) welfare.kcomwel.or.kr 회원가입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휴양콘도 신청
  - (선정방법) 평일 : 선착순, 주말·연휴·성수기 : 접수제
-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kcomwel.or.kr) > 뉴스 / 공지사항

### <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>

- 추진배경 :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
- 주요내용
  - (이용대상 확대)
    - 현행 : 저소득 노동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), 사업주 주관 워크숍(평일)
    - 개정
      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
      - 산재보험특례적용자, 부서장 등 친목·휴양목적 단체이용(평일)
  - (선정시기 및 선정방법)
    - 현행 : 선정시기(주 2회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우선순위\* 적용)
      - \* 이용률이 낮은 자 > 점수가 높은 자 >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
    - 개정 : 선정시기(월 1회, 매월 15일까지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접수제\* 적용)
      - \* 임금수준, 기업규모, 취약계층,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
- 시행일 : 2020년 3월 1일

## 가족돌봄휴가 신설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### □ 가족돌봄휴가(무급)가 신설됩니다.

-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\* 가족돌봄휴가 기간(최대 10일)과 가족돌봄휴직 기간(최대 90일)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

-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.

- (현행)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→  
(개정) 조부모, 손자녀도 포함

### □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

#### <가족돌봄휴가 신설>

- 추진배경 :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
- 주요내용
  -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(무급) 신설
    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
    - 가족돌봄휴직 기간(연간 90일)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
    -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
  -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영길 (☎ 02-950-9830)

##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급여 상한액 인상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□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○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\*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%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

\*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,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

○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.

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출산·육아지원

### <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>

□ 추진배경 :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

□ 주요내용

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(180 → 200만원)

② '20.1.1.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'20.1.1.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

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※ 문의 및 상담 :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11~3)

**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**  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-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.
    -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
    -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.
      -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  - 개정내용은 **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**됩니다.
    -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~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[고용노동부 홈페이지](#)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**<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>**

-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
- 주요내용
  -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·부과
    - 현행 : 민간기업, 공공기관, 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이 아닌 노동자)
    - 개정 :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8)

□ 장애인 의무고용률\*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.

\* 3.1%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.4%

-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, 중·경증 여부에 따라 30~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
- 앞으로는 월 30~8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.

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### <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>

- 추진배경 :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
- 주요내용
  - 지급단가 인상 : 성별, 중·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~80만원 지원
    - 중증여성 60 → 80만원, 증증남성 50 → 60만원, 경증여성 40 → 45만원, 경증남성 30만원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□ 공공기관\*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.

\* 「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○ 현행 : 총 구매액의 1,000분의 3(근거 :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69호)

○ 개정 : 총 구매액의 1,000분의 6

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<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>

□ 추진배경 :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

□ 주요내용

○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 
(잠정 : 1,000분의 6)

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-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,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.
  -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,350원에서 8,590원으로 인상됩니다.
  -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### <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>

- 추진배경 :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
- 주요내용
  -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
    - 현행 : 시급 8,350원
    - 개정 : 시급 8,590원
 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
    -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-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.
  -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.
  -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,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.
  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### <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>

- 추진배경 :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
- 주요내용
  -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
    - 현행 : 최대 7주
    - 개정 : 최대 6개월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**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**  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-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.
-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
-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.
-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(지원대상) 비장년 → 10개 유형(중증만 참여가능)  
장년(50세 이상) → 전체 15개 유형(중·경증 무관)
  - ② (지원수준) 인턴지원금 → 약정임금의 80%(최대 6개월, 80만원 한도)  
정규직전환지원금 → 월 65만원(고용유지시, 최대 6개월)
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**<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>**

- 추진배경 :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,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
  - (사업체 참여조건)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
  - (인턴 참여조건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,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  - \*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□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

○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, 서비스 대상 9,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,

○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, 서비스 대상 10,000명으로 확대하고,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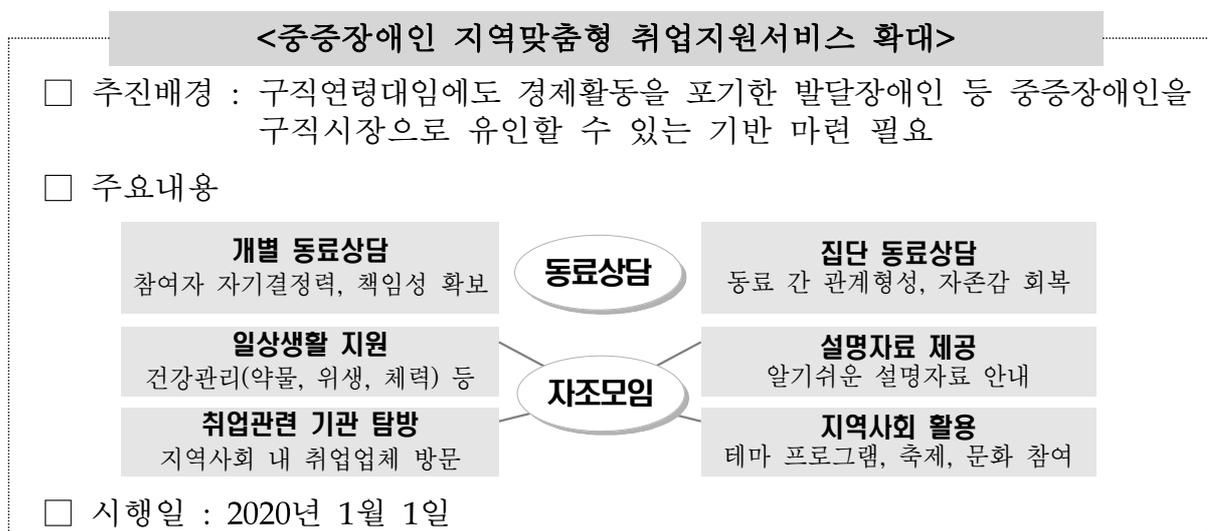
□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(지원대상)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,000명

② (지원수준) 수행기관: 기본운영비 48만원, 취업연계수당 20만원  
참여자: 1인당 1일 3천원

□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

##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-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.
-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(최대 3개월, 총 90만원)이 지급됩니다.
  -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,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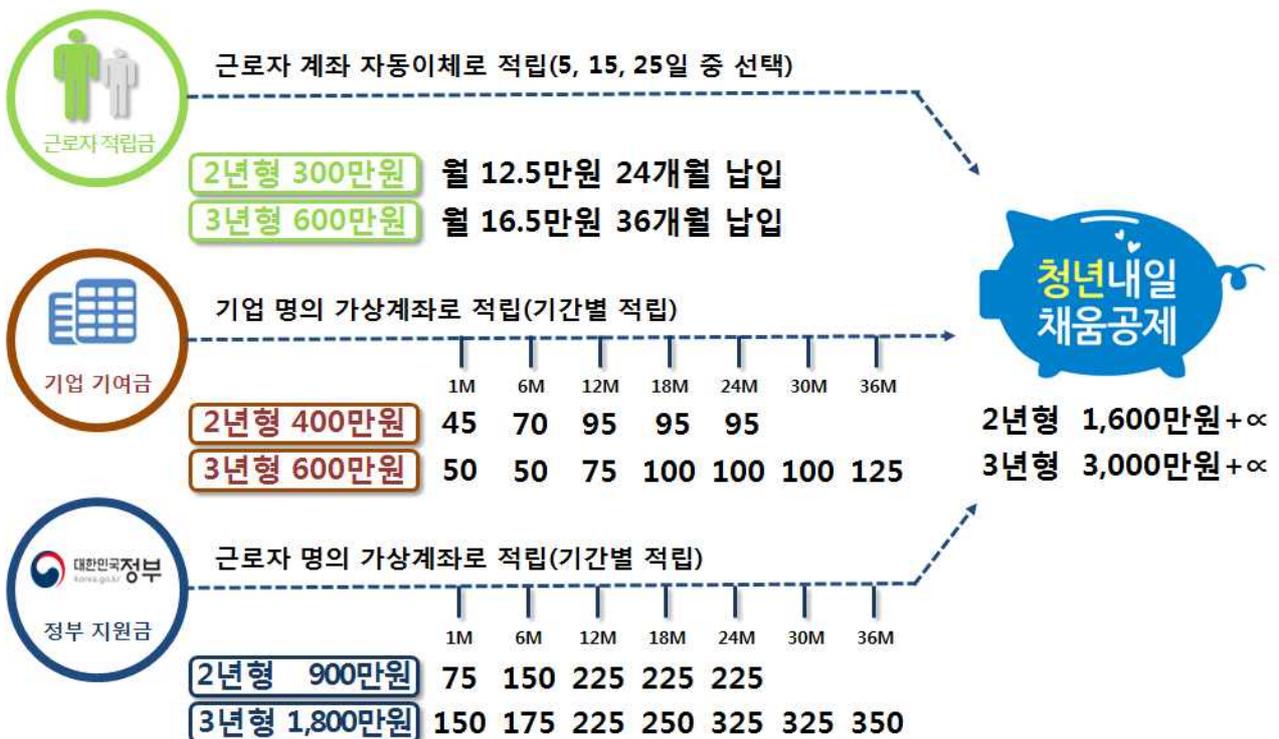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### <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>

- 추진배경 : 생활 형편으로 인해 빠른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취업 지원
- 주요내용
  -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
  - 기존 과정 외 취업실무위주 프로그램 과정 추가
  -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(최대 3개월, 총 90만원) 지급
- 시 행 일 : 2020년 1월 1일

##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 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   - \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\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 “ )
 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 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**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**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## 2019 기업지원제도 안내

### ○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\* 주요지원내용 붙임 참고

1	고용창출장려금	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,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(심사형), ③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, ④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, ⑤고용촉진장려금지원
2	고용안정장려금	①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시간선택제 전환지원, ③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3	고용유지지원금	①고용유지지원금, ②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①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

### ○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- **문의전화:** 고용노동부 콜센터 (국번없이) 1350,  
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-2171~1800~5, 1833  
 (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, 8층)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## 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용장려금 유예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3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3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	· 근무체계 개편,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10만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고용장려금 유정금	정규직 전환지원	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
	시간선택제 전환지원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	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고용유지 지원금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장년·고령자 고용장려금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(대규모 기업 10%) 한도, 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('18년도 24만원)
	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	·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[지원수준] 근로자: 감액금액의 1/2, 연간 1,080만원 한도(최대 2년), 사업주: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(최대 2년)